

七 公 開 討 議

(7月22日(日) 午後2時)

會長：中央教育研究所 講堂

1. 圖書館法과 韓國圖書館의 進路

提案 朴 熙 永 (韓國外國語大學 圖書館 司書長)

◎朴熙永(韓國外國語大學 圖書館 司書長)
제가 朴熙永입니다. 于先 圖書館法이
問題가 된 第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에
對해서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圖書館協會가 創立된 것은 1955年
4月16일이었습니다. 創立總會席上에서 圖
書館法을 制定 公布해 달라는 것을 建議하
도록 可決하고 그 이튿날 開催된 理事會
에서 嚴大燮氏와 제가 法草案作成을 一任
받았습니다.

5月1일에는 文敎部와 國會文敎分科委員
會에 圖書館法制定을 建議했고 8月6日 理
事會에서는 作成된 法草案을 朗讀했읍니
다. 10月8日 理事會에서 法草案이 檢討되
었으며 1956年 1月7日 理事會에서 法草案
의 檢討를 終結지웠습니다.

第一 처음으로 作成되었던 이 草案은 4
章13條로된 大端히 簡略한 것이었습니다.
第1章 總則 第2章 公立圖書館 第3章 私立
圖書館 第4章 其他로 되어있는데 第7條에
는 入館料를 無料로 한다고 된 純全히 公
共圖書館法案이라고 하겠으며 入館料 問
題는 처음부터 無料라고 하였습니다. 1956
年 6月22일에 여려 分科委員長이 選任되
었는데 法制委員長으로 金成원氏가 任命
되어 1年동안 別일을 못하다가 1957年 5

月8日 金석선, 李종문, 유통璽, 전영권,
金京一, 嚴大燮, 朴熙永等 8名의 委員으
로 法制委員會가 構成되어 먼저 말씀드린
草案을 再檢討 修正하기에 着手하였습니다.
5月14日부터 9月11일까지 9次에 걸쳐
會合하여 작성된 새로운 法草案을 10月11
日 當時 諮問委員인 朴日經氏와 合議를
보아 11月18日 委員長이 法草案起草의 完
了를 報告했으며 12月10日 理事會에서 檢
討된草案을 採擇했습니다. 이때 起草한
草案은 6章35條로 되어있는데 第1章은 總
則 第2章 國立圖書館 第3章 公立圖書館
第4章 私立圖書館 第5章 學校圖書館 第6
章 圖書館協會로된 것이었습니다. 後에
있을 豫定한 公開討論의 둘째 번 問題인 國
立中央圖書館 問題가 이때부터 나왔던 것
입니다. 國立圖書館에 關해서는 第2章이
9條부터 12條까지에 規定해 있으며 한便
國立圖書館이나 公立圖書館이 모두 入館
料를 無料로 해 있고 第5章 學校圖書館은
大學, 中高等學校, 國民學校等 各種 圖書館
을 모두 一括해서 便宜 있습니다.

1958年 3月3일에는 行政分科委員會가
圖書館法案의 修正案作成을 議決하고 7月
7일에는 修正案을 作成完了했으며 7月11
日 理事會에서 修正한 法案을 審議하는

한便 圖書館法推進委員會를構成하기로
可決했읍니다. 이때任命된推進委員은
具泰會, 蔡觀석, 신현경, 양병백, 朴熙永
이었읍니다. 7月11日理事會에서審議한
法案은 4章30條로되어 있으며 前번草案
과의 差異點은 國立圖書館은 國立圖書館
法을 別途로 制定한다고 되어 있는點이라
고 하였읍니다. 第1章 總則 第2章 公共圖
書館 第3章 學校圖書館 第4章 圖書館協會
로 되어있는法案을草案해서推進委員會
에推進해줄것을一任하였습니다. 그래서
9月19日 圖書館法推進委員會가 召集되고
9月23日에는 國會 文教分科委員長과 意見
을交換하고 11月1일에는 文教部長官과
民議院議長에게 圖書館法의 制定을 請願
하였읍니다.

11月20일에는 國會의 閔長식議員이 圖
書館法案을 正式으로 國會에 提議하였는
데 이法案은當時協會案과 그리 큰 差異
가 없는것이었읍니다. 이제 國會에 提出
했던法案을 紹介하면 第1章 總則 第2章
國立圖書館 第3章 公立圖書館 第4章 私立
圖書館 第5章 學校圖書館 第6章 圖書館協會
로 되어있는 6章 36條의法案이었읍니다.
그러나 薄運한 圖書館法案은 1958年
12月 國會의 2·5政治波動으로 말미암아
모든 法律案이 废棄됨에 따라 圖書館法案
도 國會에 上程까지 하였다가 废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59年 1月26日 協會總會에서는 如前히
圖書館法通過促進을 政府에 建議하기를
可決하고 政府에 建議하는 한便 2月27日
協會에서는 圖書館法審議會를構成하였읍
니다. 當時 圖書館法案이 3種이었읍니다.
協會自體가草案한것과 閔長식議員
이 國會에 提出했던것과 또하나는 延世大

學校圖書館學會案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圖書館法審議會가構成되었는데 委員은
行政分科委員 11名 事務局長이推薦한 3
名 延世圖書館學會에서 3名이 나와 都合
17名이었는데 審議會議長은 白鱗氏가 맡
아서 圖書館法案을 새로起草하게 되었읍
니다.起草會議는 2月27日부터 5月4일까
지 5次의 會合으로法案의內容을修正하
여 5月9日理事會에서 承認하게 되었읍니다.
이때承認된法案은 全部 4章 35條로
서 第1章 總則 第2章 公共圖書館 第3章
學校圖書館 第4章 其他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法案이 요近來까지當局에 提出되
고 있는 圖書館法案입니다. 協會로부터
여러 圖書館에 數次 보내드렸던 그法案
이 바로 이때起草한法案입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드려본다면

(圖書館法草案朗讀)

이렇게決定한法案은 5月12日 文教部
와 國會에立法資料로 提出했읍니다. 한
便 6月2日에는 韓國日報社가 主催가 되어
圖書館法에對한 座談會가 開催되었는데
社會的으로도 많이反映되었읍니다. 6月
9日理事會에서推進方案을 討議하고 10
月23日에는 民議院各議員에게 書面으로
理解와協助를 要請했읍니다. 이와같이
圖書館法의 制定公布를 爲하여 애를 쓰
는대로 不拘하고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1960年 1月25일에 있었던 協會總會
에서는 故金甲童氏(前慶熙大學校 圖書館
圖書課長)는 圖書館法推進을 爲한 全國圖
書館大會를 4月에 開催할 것을 提案 滿場
一致로可決하였으나 4月에 開催는 보지
못하였읍니다. 그동안 圖書館法의 制定公
布를 建議하고 法草案을立法資料로 提出
한回數는相當히 여러번 있었읍니다. 그

려나 또 한해를 보내고 1961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圖書館協會가 創立할때 圖書館法問題와 함께 創立하다실이 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圖書館法은 如前히 制定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軍事革命이 있었던 直後인 1961年 6月 10日 國家再建最高會議에 圖書館法規를 制定公布하여 끌것을 建議하였는데 6月28日부터는 最高會議企劃委員會에서 圖書館法案의 討議가 始作되었다는 消息을 들었읍니다. 7月1일에는 文教部長官에게 圖書館法의 制定을 建議한바 있는데 8月初旬頃에는 最高會議社會文化委員會에서 圖書館法案의 審議를 一旦 끌내고 文教部로 移送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圖書館法은 教育과 關係되는 法이라고 해서 政府의 意見을 듣기 爲하여 文教部로 移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1962年인 올해를 마자하고 말았읍니다.

1月28日 協會는 總會가 開催되고 總會에서는 傷例의in 建議書提出을 決議하고 建議書를 提出했읍니다. 그間 文教部에서 起草된 圖書館法案이 法制室로 移送되어 檢討되다가 지난 3月에는 法制室로 부터 文教部로 다시 返戻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文教部에서 圖書館法案을 再檢討하게 되었는데 4月14日 理事會에서 文教部와 協議할 세분의 代表를 選出해서 5月9日 文教部에서 連席會議를 가졌읍니다. 그때 協會로서는 다섯명이 나갔읍니다. 제가 이때 느꼈던 率直한感情을 말씀드리자면 文教部가 圖書館法을 中心해서 圖書館人들과 協議하겠다는 그 誠意에 對해서 感謝했으며 그러기에 討議가 真摯하였으며 即席에서 解決할 수 있는것은 그자

리에서 또 重大한 問題는 協會 意見을 最大限으로 받아주었고 研究할 問題는 保留하는等 程으로 効果가 커웠읍니다. 다만 行政官吏들이 圖書館事業의 內容을 모르기 때문에 그 內容이 不合理한 點이 없지도 않습니다마는 이文教部案도 草案이 끌나 法制處로 넘어가서 現在 제가 알고 있기에 法制處에서도 審議·修正되어 그 다음 過程인 次官會議에 上程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以上이 圖書館法을 爲한 또 圖書館法案이 걸어온 經路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圖書館法이 通過될 것을 確信하며 圖書館法이 公布된 然後를 생각해 볼必要가 있읍니다. 圖書館法에서 무엇을 要求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于先 國民教育과 民族文化向上에 있어서 圖書館이 찾자하고 있는 比重이 大端히 큰것임으로 圖書館을 設置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圖書館을 設置해야 된다는것이 圖書館法에서 義務的으로 設置할것을 規定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法이 公布되면 圖書館이 많이 設置될 것입니다. 現在以上の 뜻은 圖書館이 있게 될것이 想像됩니다. 即 우리가 圖書館法에서 바라는 것은 첫째 圖書館이 많이 設立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設置되어있는 또 設置될 圖書館의 經營과 育成을 爲하여 法的인 根據와 保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많이 設立되어 가고 法的인 土臺위에서 發展하기에는 무엇보다도 圖書館에서 일하는 專門職이라고 할수 있는 司書·司書教師들의 資格을 法的으로 保障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圖書館法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며 目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圖

書館法이 制定公布되어 運用될때에 우리自身들이 일하고 있는 圖書館은 어떠한方向으로 나가야될것인가 하는點을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于先 먼저 생각나는점은 韓國의 土壤에서 圖書館을 어떻게 發展시켜야 할것인가를 우리는研究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우리自身이 앞으로 韓國의 圖書館을 이끌어나가는데 必要한 우리들의 힘을 養成해야 되겠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新聞社說을 보면 圖書館의 數가 늘어가는데 있어서는 莫大한豫算이 必要하다는 것을 말했고 또 그以前에 무엇인가 問題點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圖書館人를 自身이 먼저 自家反省이라고 할까 이런것이 반드시 先行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는 우리들이 할일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事務局長이 말씀했습니다만 分類表라던가 編目規定이라던가 圖書記號라던가 또 우리들 圖書館이 所持하고 있는 모든 圖書의 目錄이라던가 이터한 極히 必要한 것이 없읍니다. 이런것을 먼저 가져야 앞으로 나갈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째로 느낀것은 圖書館法이 公布된以後의 우리들은 只今도 亦是 團結했읍니다만 只今 以上으로 더욱 合心해서 모든것을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를 研究하고 發展하는 길을 模索해야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約束한 30分이 지났습니다. 圖書館法에 대해서 質問이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姓名未詳=圖書館法에 學校에서 圖書館을 設置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拘束力を 가지고 있는지요.

◎朴熙永(外大 圖書館 司書長)=設置義務規定은 高校 및 大學은 다 들어가 있읍니다.

◎姓名未詳=經理問題는 안들어 갔습니까?

◎司會 李宗文=그것은 들어 잘 性質이 아닐것이며 財政補助는 法과 施行令에서 무슨 方法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朴熙永(外大 圖書館 司書長)=제가 생각하기에는 國立圖書館 같은데서는 제가 아는範圍內에서는 圖書館文獻蒐集을 한다던지 다음에 韓國의 文化財 特別書籍에 對한 것이 于先 圖書館에서 잘 保障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제가 듣건대 假令 國家豫算을 쓰는데에는 冊한 卷을 사도 그것이 限界點이 있는 模樣인데 特히 韓國書籍이나 흔히 있는 書籍은 競爭入札을 하게 되는데 韓國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競爭入札이라도 그런것은 어렵고 그런 問題가 있기때문에 저는 學校圖書館의 經理問題는 獨立되어서 그것이 館長이면 館長 밑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姓名未詳=앞으로 圖書館法이 通過될때 까지의 過程을 말씀해주시고 組織의 問題에 對해서도 말씀해주시십시오.

◎司會 李宗文=그것은 圖書館法뿐만 아니라 무슨 法이거나 制定되기까지는 맨 처음에 그 分野를 擔當하고 있는 主務部 即 文敎部에서 草案을 作成하여 法制處로 넘어갑니다. 法制處에서 次官會議, 閱議(長官會議)에서 最高會議 文社分科委員會를 거쳐서 法制司法委員會 그리고 最終으로 最高會議 常任委員會로 넘어갑니다. 常任委員會에서 通過되면 政府로 移送되어 政府가 公布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도록 적이는

그것을 推進시킬 責任이 있습니다. 最近에 法이 法制處에서 次官會議로 올라갔는데 次官會議에서 무엇을 檢討하느냐 하면 公共圖書館問題는 地方自治政府에 依해 設置되니 地方豫算問題를 查定해야만 합니다. 얼마假量이면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 然後에 이것이 經濟5個年計劃하고 어떤 位置에 놓여있느냐 하는것을 檢討하게 됩니다. 그런데 現在當局의 態度는 5個年計劃以外 돈이 들어가는 事業에는 興味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文教部에서 圖書館法의 必要性을十分認定해서 法을 推進하는 무슨 움직임이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日本이라던지 美國에서는 英美法系를 따르고 있으나 大韓民國에서는 大陸法系에 따르고 있답니다. 可及의이면 缩少해서 줄거리만 넣고 남아지는 閻令에서 檢討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점에서 公共圖書館 設立問題 國立圖書館의 組織 司書教師 司書資格問題 이런것은 法에서는 根據條文만을 設定해 놓고 細部의in施行은 閻令으로 規定하도록 되었습니다.

司書問題같은데 對해서 質問이 없읍니까.

◎李규범(釜山敎大)=司書問題는 왜 閻令으로 두는지요.

◎司會 李종문=저의가 이 問題를 法에다가 넣는것과 閻令으로 定하는 두가지를 檢討해 보았는데 司書資格問題를 閻令으로 넣으면 어떠한 利點이 있느냐하면 나중에는 結果가 어떻게 나올련지 모르지만 現在로서는 우리나라에서 司書의 資格證은 文敎部長官이 發行하도록 되어 있는데 圖書館 數字와 圖書館에서 必要

한 司書의 絶對量하고 現在 司書資格을 받을수 있는 數를 算出해보니 그 絶對量이 現在 不足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初創期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外國처럼 어떤 資格 即 教育과 經驗을 完全하게 計算해서 法에다가 넣으면 앞으로 每年 司書職의 必要한 教育이 短期 長期로서 繼續 펼쳐야 즉 그것이 今年에 다르고 來年에 다르고 現實이 變化하는데 即 司書의 數가 늘어가는바 只今의 現實에서 法에다가 넣으면 法을 앞으로 修正하는데 複雜性이 大端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올 數를豫測해서 法에다가 미리 規定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볼때 閻令은 法보다는 變更이 單純하자요. 그런面에서 오히려 意義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責任있는 發言은勿論 될수 없읍니다. 그러나 只今 資格證을 發付하게 되면 司書教師資格證과 司書職資格을 받을 사람이 얼마 안됩니다. 圖書館協會에서 6月 月報에 여러분에게 登錄을 要請한 것은 現況을 確實히 把握하기 위해서이고 또 7月31日까지는 全部해서 對策을 講究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各分野에서 1人式 나오게 되어있는분들의 意見을 먼저 聽取하겠습니다.

公共圖書館에 張仁植 大學圖書館에 劉永琰, 學校圖書館에 金京一, 特殊圖書館에 趙圭英氏 等 배분이 올시다.

◎張仁植(仁川市立圖書館長)=저도 文敎部에 依해 起草된 圖書館法案을 審議키 위하여 지난 6月5일에 文敎部에 들어갔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草案의 內容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一一히 言及하는 것을避け겠습니다.

지금도 李事務局長의 說明도 있었읍니다만 제가 알기에도 閣令으로써 解決할 만한 것은 모두 큰 줄거리만 法文化하고 閣令으로서 解決도록 할 것을 同意합니다.

假令 公共圖書館의 設置를 義務化한다는 問題같은 것은 굵은 問題라고 보겠습니다. 司書職의 資格과 教育問題 亦是 閣令으로 마련토록 밝혀져 있는것으로 암니다.

다만 이 法案에서 從來와 다른 問題로서는 公共圖書館의 入館料를 徵收하도록規定한 點, 運營委員會規定의 不備, 圖書館財政에 대한 規定의 不備等이 크게 다른 點입니다.

法을 制定하는 이 마당에서 이왕이면 보다 좋은立法이 되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만 言及하겠습니다.

入館料徵收禁止에 대한 條項은 뚜렷이法案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理由로서는 萬一 이 條項이 안들어가 있다면 地方自治團體에서는 圖書館이 营造物인 까닭에 期於히 徵收해야 한다고 固執하게 될 것입니다. 营造物을 使用할 때에는 原則적으로 手數料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先進國에서는 正反對의 思考입니다. 市民은 納稅를 했기 때문에 政府는 그 納稅의 一部를 當然히 市民을 위한 教養施設인 圖書館事業에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思考方式입니다. 萬若入館料를 받는다면 二重徵收를 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公共圖書館은 民主主義의으로 民衆에게 奉仕해야 한다는 原理밑에 運營해야 하느니만치 圖書의 選擇같은 問題에 있어서도各界의 市民을 委員으로 招待하여 그 意見을 듣는 等 地域社會에 適應하도록 奉仕하고 있읍니다.

各界의 市民들로構成되는 運營委員會亦是 民衆意思를 圖書館事業에反映시키고 있읍니다.

公共圖書館은 奉仕對象이各界各層의 市民을 相對로 한다는 좋은 點이 있으면서도 實際의으로는 각層 사람들과 有機의으로 聯關係를 맺을 機會가 없습니다. 그래서 公共圖書館은 民衆으로부터漸漸으로워진 것입니다. 運營委員의 資格은 教育에 多年間 經驗이 많다면지 文化事業에理解가 많은 人士들로 되어 있읍니다. 運營委員會制度 만은 公共圖書館을 民主的으로 運營하기 爲해서 반드시 反映되어야 겠읍니다.

國庫補助는 經濟開發을 하고 있는 等現實的으로 보아 꽤 어려운 바가 있겠읍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形態로 던지 나타났으면 합니다. 「補助할수 있다」는 이런 程度로라도 規定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見解는 以上과 같습니다.

◎劉永茲(서울大學校法大 圖書館 司書長) = 이 圖書館法에 對해서는 圖書館專門家들이屢次 여러角度에서 檢討 論議되어온 問題이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特出하게 意見을 提示할것은 別로 없읍니다. 다만 그 동안 여러 채널을 通하여 草案이 作成되었던것이므로 現在 懸案의 草案中에 있는 條項內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規定條項 하나를 더 넣었으면 생각합니다. 그것은 草案에 公共圖書館에 반政府刊行物을 配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될수 있으면 大學圖書館도 亦是 그의 受配對象으로서 거기에다가 包含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大學圖書館은 深奧한 學理와 廣範하고 精致한 應用技術問題를 教授研究하는 機關의 圖書館

이니 만치, 그리고 政府의 組織活動과 奉仕에 關한 理論과 實際技術面에 지나칠程度로 後進相을 빼우고 있는 우리의 現實에서는 더 우기 政府刊行物은 公共圖書館에 뭇지 않게 大學圖書館에도 備置하여야 할 必要가 있으므로 大學圖書館에 대한 政府刊行物의 配付를 위하여 한條項을 挿入할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金京一(京畿高等學校 司書教師)=조금前公共, 大學圖書館의 立場에서 圖書館法으로 하여금 어떻게 保障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學校圖書館의 立場에서도 保障條件으로 重複되는 點이 있으나 이는 圖書館法이 없는 오늘의 圖書館界로 보아 各級圖書館의 共通의 問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點에서 出發하여 學校圖書館이 바라는 法的條件와 保障法意에 대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學校教育은 學校圖書館 없이는 이루워 질수 없다고 하는 말에서도 學校圖書館의 存在價值를 充分히 認定할수가 있읍니다만 아직도 學校圖書館의 設置가 全般的인 現象이 뜻되고 있는 實情에서 圖書館法은 첫째로 學校圖書館의 設置를 보다 強力히 義務化 되도록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問題는 韓國의 學校教育의 改善과 發展의 原動力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法이 包含되어야 할 點은 學校圖書館의 運營費를 公金으로서 負擔되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問題는 現 學校圖書館의 實情으로 보아 매우 緊急하고 重要한 問題라고 봅니다.

다음의 셋째로는 學校圖書館의 育成을 위한 行政的인 路線으로서 學校圖書館을 擔當 奨學官, 奖學士를 設定하도록 하여

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學校司書와 司書教師의 T.O가 保障되어야 하겠다는 것 입니다. 學校司書와 司書教師의 T.O制度의 法的保障은 반드시 在籍學生數에 依하여 定員이 制定되어야만 할것입니다. 다섯째로는 基本法自體에는 반드시 學校圖書館 設置와 運營에 關한 科學的인 基礎를 根據로 한 基準을 別途 制定하는 條項이 明示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이 基準을 制定함에 있어서는 現 文教部令 第84號의 學校圖書館의 該當條項을 無效로 하는데서부터 始作되어야 할것이고 重要한 內容으로서는 學生數와 學校의 特殊性에 適應되는 施設基準이라든가 또는 司書教師의 擔當時數라든가 圖書館 資料의 構成基準과 學校內에서의 學校圖書館의 機構上의 位置等도 具體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學校圖書館의 奉仕活動 即 運營에 關한 仔細한 基準도 內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配當된 時間도 다 되었음으로 매우 不足한 討論이 있읍니다. 不足한 點은 이 자리에 參席하신 學校圖書館을 擔當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法에 대하여 提案하신 朴熙永先生께 많은 質問과 提案討論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討論을 끝이는 바입니다.

◎趙洙永(農業協同組合中央會圖書室)=特殊圖書館을 代表해서 올라왔읍니다. 조금 前에 朴熙永先生께서 經過報告 말씀을 할 때에 圖書館法草案 第1章에서 第4章까지 또 1章에서 6章에 이르기까지 무슨 圖書館 무슨 圖書館 羅列했읍니다만 그 가운데에 아무리 귀를 기우려봐도 特殊라는 「特」字는 없읍니다. 特殊圖書館이 孤兒取扱을 받을 수 있느냐……勿論 特殊圖書館

은 그機關의 意思에 따라서 設置되는것이기때문에 義務規定은 規定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왕 設置된 또한 앞으로 設置될 機關은 절오라기라도 불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法을 만들때에 法을 만드는데에 技術上에서 除外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수 있는대로 꼭 여기에 대한條目 하나만이라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特殊圖書館에 從事하고 있는 職員은 資格받은 분들이 從事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니까 特殊圖書館 發展도 단圖書館 發展과 併行하는것도 事實이고 또 거기에 從事해야 되는 사람은 有資格司書해야 되기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朴熙永=지금 公共, 大學, 學校, 特殊圖書館 네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于先 公共圖書館의 入館料問題와 國庫補助問題와 運營委員會問題가 있는데 入館料와 國庫補助問題는 제가 알기에는 條文에 插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運營委員會問題는 다시 研究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大學圖書館에서 말씀하신 政府刊行物을 大學圖書館에 까지 달라는 問題인데 이것은 政府刊行物을 大學圖書館에 까지 준다는 條項은 보지못했습니다. 그러나 政府刊行物이라는것은 國民에게 公報活動을 하는것이 大部分의 目的인데 研究資料는 特別히 研究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公共圖書館에는 寄贈되지만 大學圖書館에는 안들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學校圖書館에서의 經費를 國庫로 充當하라는 問題와 基準問題, 司書教師問題 圖書館의 學校內에서의 位置 運營問題 이런것인데 이중에서 施行細則에 들어갈

問題도 많이 있습니다. 學校圖書館이 設置된 다음에 設置한 學校에서 義務의으로 運營해야만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研究해 보겠습니다.

다음 特殊圖書館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서는 特殊圖書館이 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仔細한것은 事務局長任께서 說明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文=原案에는 들어있었으며 約2週日前에는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包含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國家의인 見地에서 볼때 私企業體나 其他 囘體가 自身의 發展을 為하여 圖書館(或은 室)을 設立했는 데 이를 法의 強制力下에 놓는다는것은 民主社會에서는 困難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法은 圖書館事業의 根據랄까 「카데·고리」를 設定하는 點을 參照하여 定義를 내리는 程度로 包含되어 있을뿐 拘束力이 탈까 強制의 義務規程은 全혀 없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分野는 앞으로 勸獎되어야 한다는 點을 考慮해서라도 當分間은 法에서 깊이 전드리지 않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찌해라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困難하다고 봅니다.

◎鄭然洙(經濟企劃院 圖書館)=圖書相互貸出에 있어서 어떤 圖書館은 貸出하고 있는데 그 貸出에 있어서收回가 大端히 隘路가 있다는것은 아시겠지만 貸出에 있어서는 一定한 法의in 根據가 없는데……

◎李鍾文=圖書의 貸出에 關한것은 大學이라던지 學校圖書館은 總長 或은 校長이 理事會의 承認이라던지 單獨의으로 決定하고 地方에 있어서는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은 地方條例에 依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法의根據가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鄭然洙=따라서 그期限이 한달以上이 될때는 어떻습니까?

◎李鍾文=그것은 內規로 定할 수 있습니다. 經濟企劃院이면 院長의 決裁로 有効합니다.

◎金基臘(釜山女子高等學校 圖書館)=지금 法草案이 文教部에서 次官會議에 넘어 갔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그걸하나 못하고 7,8년이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제시는 先生任들中에는 훌륭히 글을 쓰시는분도 계실텐데 每日같이 社說을 쓰신다던지 해서 隱然中에 230萬市民이 볼수 있도록 하는 方法과 또하나는 自己地方出身 最高委員이라던지 또는 親知를 通過해서라도 朴議長에게까지 이런式으로 通過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各者가 努力해 볼 수 있다는 點을 參考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文=過去에 協會가 國會議員을 通過하여 國會에 냈다가 그것이 國會에서 論議가 안되어 陳情書와 建議書를 내면서 7年이 걸렸고 이번에 圖書館法이 지난 3月 8日에 法制庭에서 文教部로 다시 왔다가 5月 8일에 文教部에서 法制處로 다시 移送되었으며 그리고 또 次官會議에서 檢討되다가 保留가 되어서 지금 판대에 가았습니다. 公共圖書館과 司書職(公務員으로서)의 數的增加等 國家豫算의 増額이 必要하므로 時間과 努力이 많이 걸릴것입니다

2. 國立中央圖書館 設置問題

◎司會 李鍾文=다음은 案件2로서 國立中央圖書館 設置問題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이問題는 우리가 그것을 懇切히 要求하고 있고 또 當局에서도 그것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勿論 우리가 바라는것과 그분들이 바라는것과는 內容이 조금 다릅니다.

美國公共圖書館의 發達史를 보면 말썽은 없었습니다만 그들은 全國圖書館大會를 召集해서 參加全員에게 地方에 내려가서 自己이름이나 또는 아는 親知의 이름으로서 自己州에서 나온 下院 및 上院 위원에게 便紙로서 一齊히 射擊을 하였습니다. 美國에서도 그런한바가 있습니다. 저의도 그러한 問題를 생각해보았습니다만 現實的으로 우리나라의 實情을 보아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것도 생각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圖書館法이 公布되어 나오기까지는 앞길이 아주 暗淡합니다. 그것이 꼭 나온다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國家政策으로 보아서 거의 不可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라도해서 法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高麗大學생들의 말처럼 「後孫들에게 부끄러운 先祖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世代에 이런것이라도 이루어노야 되겠다는것이 當代 우리들의 意志일 것이며 苦憊 또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圖書館人은 一種의 使命感을 가지고 獻身하는 職種이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權勢와는 相關없는 요즘의 社會風潮에서 볼때 極히 微弱한 職業이나 後進國民수록 國家의 重要한 價値가 있는 分野이므로 우리는 苦生을 참고 使命感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公開討論에서 이런 案件을 討議하게 된 動機를 說明드릴必要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公共圖書館事業은 우리나라에서 第1次의 으로 獨先되어야 할 分野이나 現在 司書職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被害를 입고 있는 분野가 바로 이 公共圖書館 分野입니다. 그런데 外國의 例나 우리나라 實情으로 보아서도 이 公共圖書館分野는 亦是 國立中央圖書館과 密接한 關係가 있읍니다. 그것은 權力의in 上·下關係가 아니라 業務의in 縱橫關係인 것입니다. 懸案中인 圖書館法이 制定되어 나오면 國立中央圖書館이 自動的으로 設置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圖書館人의 立場에서 보면 國立中央圖書館도 其他 公共圖書館中 그 하나에 다를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圖書館이 國家의으로 지니는 位置가 大端히 重要합니다. 外國에서 韓國에 關한 冊이 出版되는데 그것을 國內에서는 모르고 있으며 어떤 冊子가 우리를 稱讚하였는지 或은 非難했는지 이러한 것을 國家에서 알아야 함에도 不拘하고 全然 모르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出版되는 册子도 國家가 保存·保管理해야 하는데 이런 點 어느 圖書館보다 重大한 使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奉仕面에서 使命이 충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公共圖書館發展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이 앞장서야 됩니다. 國立中央圖書館은 가장 많은 藏書와 가장 많은 專門職들을 抱容하고 있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大學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도 이事業을 推進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問題等이 重要하기 때문에 우리는 專門職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앞으로 國立中央圖書館에 어찌한 體制가 必要할 것인가 日本이나 美國이나 濠洲式으로 議會에 隸屬시키느냐 아니면 韓國의in 體

制를 갖출것인가 現在 最高會議圖書館과 國立圖書館兩쪽에서 쓰고 있는 經費로도合理的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을 세울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檢討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圖書館에서 이 問題를 檢討하고 오늘 이 時間에 大會를 갖는 圖書館人の 良心과 德知를 總動員해서 私心 없이 討議해서 現在의 經費로서도 우리나라로 벼젓한 國立中央圖書館을 갖고 奉仕面에서 發展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들자는 것이 이 討議의 意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公共圖書館, 國立圖書館, 大學圖書館, 最高會議圖書館, 特殊圖書館에서 각각 한분씩 나오셔서 國立中央圖書館에 바라고 싶은 點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公共圖書館

◎嚴大燮(慶州市立圖書館長)=제가 公共圖書館의 立場에서 國立中央圖書館設置에 대해서 몇 말씀 제 所見을 드리겠습니다. 具體的인 말씀은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들이 여러 角度에서 論議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짧은 時間에 몇 가지 要點을 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國立中央圖書館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世界 40餘個國에 國立中央圖書館의in 性格을 具圖書館이 있는 줄 아는데 이를 여러 나라 國立中央圖書館의 性格과 技能에 는 많은 差異가 있습니다.

그러면 果然 우리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은 어떠한 것이 우리 實情에 맞겠는가? 이 問題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論議

되는것이 아니고 紙上을 通해서나 또는 모임을 通해서 여러次例 論議가 되었읍니다. 多幸히도 우리나라是 美國과 日本의 圖書館 影響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影響을 미치고 있는 나라의 長點을 따는 것이 좋은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美國議會圖書館은 支部圖書館이 33이고 日本國會圖書館은 支部圖書館이 28個가 있는 줄로 記憶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革命後에 現在의 國立圖書館이豫想外의 變革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崔台鎬 現館長이 非常한 活動을 했읍니다. 그래서 從前豫算의 70% 程度가 增加되었다는事實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劃期的인 成果입니다. 또 하나는 革命後 昨年 7月부터 所謂 最高會議圖書館이 一般 公開를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公共圖書館의 性格을 띠게되었다고 表現할 수 있읍니다. 이것 또한 큰 變革의 하나입니다. 過去의 國會圖書館은 그豫算과 職員數에 있어서는 國立圖書館과 別差異가 없었지만當時의 國會議員들은 圖書館을 거의 利用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좋은 資料들이 死藏되어 왔던것입니다. 그것을 一般國民에게 公開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에 크게 이바지 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公共圖書館의 立場에서 우리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의 性格과 技能에 대한 要望事項을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國家書誌센타로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刊行物의 保存機關이 되어야 할것이고 同時에 外國 여러나라에서 나오는 文獻中에서 國家의으로 必要한 것은

國家豫算으로 菲集保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國際文獻交換센타로서의 技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國立圖書館은 國立圖書館 대로 最高會議圖書館은 最高會議圖書館 대로 大學圖書館은 大學圖書館 대로 각己 外國과의 文獻交換을 하고 있읍니다만 같은 資料를 같은 外國圖書館에 二重三重으로 보내게 되는가 하면 그反面에는 必要한 資料를 고루 獲得하지 못하는 큰 矛盾을 가져오게 되어 國家의으로莫大한 損失을 주고 있읍니다.

셋째는 奉仕對象의 問題입니다. 지금 까지의 國立圖書館은 小數의 學生들과 受驗工夫를 하는 사람들의 工夫房으로 利用되고 있기때문에 폐예로 重要的 資料를 閱覽하려는 사람들은 滿員謝絕이라는 待接를 받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矛盾은 하루速히 是正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國立中央圖書館은 모든 政府機關과 一般國民에게 널리 奉仕해야 할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奉仕順位에 있어서 國立中央圖書館의 重要資料를 全國民에게 優先的으로 活用시켜야 할것이고 一般資料는 一般國民에게 優先的으로 奉仕할 方途를 講究해야 할것이며 受驗工夫를 하는 學生들에 대한 奉仕는 第3次의인 對象이 되어야 할줄압니다.

넷째는 國家圖書館 行政의 代行機關으로서의 技能입니다. 國內의 各級圖書館 특히 公共圖書館에 대해서는 어머니 圖書館으로서의 技能을 發揮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國立中央圖書館의 事業으로 司書養成機關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延世, 梨花 두大學에서 高級司書敎

育을 實施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 大量新設될 地方公共圖書館의 實務要員을 養成하는 機關이 꼭 必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印刷카드問題입니다. 이것은 이미 最高會議 圖書館에서 實施하고 있는 출아는 데 이事業은 擴大해서 全國의 圖書館에 補給시킨다면 카드作成에 消耗되는時間을 一般圖書館 奉仕에 크게 活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圖書選擇委員會는 꼭 두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舊政權下에서 國立圖書館이나 國會圖書館이 年間 千數萬冊의 圖書를 購入했읍니다. 그런데 그當時만 해도 着實한 大學圖書館에서는 教授任들이 圖書選擇에 懷重한 나머지 圖書購入에 難關이 쳤다는事實과 比較해 볼때當時의 國立 또는 國會圖書館이 「圖書選擇委員會」 없이 小數職員의 判断으로 巨額의 圖書購入를 하였다는 것은 決코 적은 問題가 아닐을 믿습니다. 앞날의 國立中央圖書館은 반드시 圖書選擇委員會를 構成하여 斯界 專門家の 協力を 얻어서 限定된豫算으로 効果적인 集書를 하여야 될을 압니다.

다음은 國立中央圖書館의 性格問題입니다. 이 問題는 우리나라 全體圖書館 發展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될 重大한 일입니다. 國立中央圖書館 問題가 우리나라의 圖書館法을 制定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障碍物이 되어 왔다는 事實을 오늘 이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過去 圖書館協會 事務局長職을 맡고 있을 당시 圖書館法이 國會文敎委員會에서 여러번 上程된 일이 있는데 그것이 本會議에 上程못된 理由는 文敎部側에서는 國立圖書館이 立法部에 屬하게 되는 것이

큰 損失인양 알고, 立法部에서는 國會圖書館이 中央圖書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固執한 까닭에當時의 國會委員들은 가장 important한 것으로 알고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을 當事者들이 서로自己便에 屬해야 한다고 밀고 당기는 바람에 마치 고래싸움에 세우등 터지는 格으로 가장緊急한 一般圖書館法을 制定하는데 支障을 招來했습니다. 제가 念慮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問題로 因해서 우리 圖書館法을 制定하는데 또다시 支障을 가져오게 된다면 兩圖書館의 當務者들은 우리 圖書館界와 全國民에게 責任을 져야 될 問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公共圖書館의 立場에서 우리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은 理想적으로는 立法部나 行政部에 所屬되지 않고 完全히 獨立된 機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理想論으로서 지금 當場에 이루워질 問題가 아닙니다. 所屬問題에 대해서는 現實으로 可能한 것은 立法部에 國立中央圖書館이 屬하는 것이 有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文敎部豫算이 國防部 다음으로 龐大하지만 그大部分이 學校教師의 人件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文敎部 自體의 事業費는 各 部處 가운데에서도 매우 가난한 部에 屬하기 때문에 現在의 國立圖書館이 中央圖書館이 되어도豫算上의 뒷받침을 期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큰 問題는 文敎部에 屬한다면 人事問題에 있어서 여터가지로 難關이 많을 것입니다. 萬若 國立中央圖書館이 一般官廳에 奉仕해야 된다면 國立中央圖書館은 本店이고 分館은

支店格으로 館長은 各部處長과 對等한 位
置에서 일을 推進할 수 있는 程度가 되어
야 될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統率해 나
가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果然
可能하겠는가 하면 當場에는 不可能 하리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圖書館界의 가장 큰 關心거리인 圖書館法問題가 主務官廳이 文敎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文敎部에서 비一토를 하면 大端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緊急한 一般圖書館法을 速히 制定하는 方便은 現在의客觀的인 情勢下에서 볼때 現文敎部 原案대로 文敎部에 屬하도록 해야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一旦 그렇게 法을 制定해 놓고 다음 段階로서 圖書館人들이 힘을 키워서機會있는데로 우리의 所信을 貫徹하는 걸
이 賢明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는立法部에 가져 간다 하더라도 지금 段階로서는 文敎部傘下에서 하루바삐 圖書館法을 通過시켜야 되는것을 다시한번 強調하고 마지막 要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現 國立圖書館의豫算은 人件費를 合해서 舊貨로 1億3千4百萬圓이고 現 最高會議圖書館이 人件費를 빼고 舊貨로 6千萬圓이니 現 國立圖書館이나 現 最高會議圖書館의豫算이 비슷하고 또 職員數도 國立圖書館이 約 60名이고 最高會議圖書館이 約 50名이 됩니다. 그러니 兩便 다相當한 陣容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機構가 各己 國立中央圖書館의 性格을 띠고 앞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人的으로나 物의으로 國家의 큰 損失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제가 公共圖書館의 立場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現 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圖書館當局者들이 서로 打合해서 훌륭한 하나의 國立中央圖書館을 이루어 주시기

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내 박수)

2. 國立圖書館

◎崔台鎬(國立圖書館長)=全國圖書館大會인 이자리에서 圖書館長의 資格은 司書職으로서 해야된다고 生覺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現在 專門職으로서 資格이 있는지 大端히 부끄러운 몸이라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우스운일이라서 個人資格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60年에 圖書館일에間接으로 參與했고 61年부터 18個月間 지금 圖書館職務에 從事하고 있습니다.

오늘 大會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圖書館協會自身이 여러분들의相互協助或은 研究理論에 매우 힘을 썼지만 行政當局에 대한 啓蒙이 끊임없이 圖書館에 대한認識을 바로잡는데에 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번에 上程된 圖書館法에 있어서 그 法의構成이라든지 或은 그內容에 있어서 文敎部側과 或은 一般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專門的으로 생각하는 것의 差異가相當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例로서 제가 社會教育課長으로 있을 때 建議案을 받고法案에 國立中央圖書館에 關하여는 別途로 定한다고 한것을 보고서 國立中央圖書館이 時急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或必要한데 더 重要한 問題라는 것인지 分明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國立中央圖書館設置가 時急한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法이 問題가 된것이 지금까지 6, 7, 8年이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는 法이

라는것이 亦是 法以前에 胎動이 있어 가지 고 그 時期를 만나서 비로소 法의 形態를 이루지 않나 생각됩니다. 大體로 法이 먼저 생겨서 일이 잘 된일이 없습니다. 自然發生的으로 그런 問題가 나서 그것이 解決되기위한 가장 좋은 方法으로서 法이 뒷받침해 나오는것이 原則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제가 國立圖書館에 와서 第一 隘路를 느끼는 것은 제가 勤務하고 있는 圖書館 이 過去에 大統領令으로서 職制가 나와있 어 그 範圍가 大端히 춥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非豫算行政으로라도 政府에게 奉仕할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發見했읍니다. 이것은 現在職制를 가지고는 할수 없다. 그래서 民主黨政府때 圖書館法이 나오기前에 業務規程을 만들어서 그 職制를 文敎部令으로 提出建議한바가 있읍니다. 그案에는 政府機關에 대한 모든 奉仕이 것은 圖書館行政에 있어서의 뒷받침이 될수 있는일 現在 하고 있는일들을 法令에다가 넣어서 提出했더니 그때에 이것은 大端히 必要하다고 생각하지만 別途로 圖書館法案이 나왔으니 이것은 上程해서 根本의으로 解決하는것이 좋겠다고 3個月後에 제가 보낸案이 다시 돌아왔읍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圖書館法이 通過되지 않은 被害者가 저이라고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이런 環境에서 國立圖書館의 이제까지 經營維持를 하고 있는것이 公共圖書館과 다름 없었다는 前事務局長 嚴大燮氏가 指摘한 뜻도 首肯할일입니다.

그러한 面에서 國立圖書館은 法文에 明示되지 않은 國家의in 面까지도 하게되는 苦衷을 解決하기 為해서豫算의 一部를 떼어가지고 分館을 따로 만들어서 參考圖

書館과 公共圖書館의 性格의 活動을 나누겠다고 建議한 結果 今年에 施工해서 8月달 이면 約 一部 180坪이 竣工될것이고 來年度엔 300坪이 完成되어 合計 5百餘名의 學生, 一般成人을 收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別途로 現在의 國立圖書館을 維持하려면 적어도 이만한豫算이 必要하다고 해서 5個年計劃을 세워 最低의豫算을 建議해서 그것이着手進行中에 努力하고 있습니다.

現在 國立圖書館이 實際로 하고 있는것 中에 가장 必要한 것의 하나는 國家의in 見地로 보아서 重要한 圖書文化財에 대한 情報입니다. 過去에 傳統으로 남겨진 文獻 여기에 대해서 國家의 保護가 없읍니다. 混亂한 틈을 타서 우리 祖上들의 貴重한 文獻이 一部商人들의手中에서 둘아가고 外國에 그런것이 流出된 例가 많읍니다. 또하나는 어느 個人이나 大學圖書館에 얼마만한 貴重圖書가 있는지 國家로서 把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國立圖書館뿐 아니라 大學圖書館 藏書도 解除를 해서 國民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國立中央圖書館이 말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外國에서 나오는 책中에 韓國에 必要한 것이 무엇인가 外國圖書文化에 대해서 情報를 얻는 機關이 없읍니다. 現在로서는 各 大學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이라던지 自己에게 必要한것만 各己 交換圖書로서 求할을 암니다만 現在 國立圖書館은 16個國 圖書館과 契約을 맺어서 事務를 보고 있읍니다만 國家의으로 볼때 各國에 모든 出版或是 著作에 關해서 情報를 把握할 必要가

있읍니다. 情報ण—타로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이 必要합니다.

셋째로는 文化政策과 關係가 될 뿐지 모르지만 公共圖書館이 생긴다 農村文庫가 생긴다 모든 文庫가 생긴다 이런 運動이 있고 特히 大學卒業한 地方青年들이相當히 關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實際로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알아보던 圖書館에 對한 理解가 없어서 或은 運營에 對한 知識이 없어서 册판 갔다가 놓게 되면 農村文庫, 마을文庫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點입니다. 現在 우리 國內에서 어떤 책이 出版된다. 外國冊中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有益하나 말하자면 圖書館에 책만 두는 것이 能事が 아니라 指導問題을 解決하기 爲한 圖書館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國家의 으로支援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選擇해야 되느냐 이것은 마땅히 地方圖書館을 만들어서 그러한 指導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支援事務를 奉仕하는 代表의 機關이 있어야 하고 公共, 私立圖書館에 對해서도 支援을 할 수 있는 技能을 가진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參考業務의 一端으로 저는 革命政府가 樹立된 後에 저는 이때야 말로 中央圖書館이 必要하다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뭣이냐하면 政府에 必要한 參考資料를 收藏하는 것입니다. 過去 15, 6年동안 우리 圖書館에 收藏된 情報刊行物을 보면 事實 보잘것이 없습니다. 統計하나를 보더라도(過去一般人们이 만든 國立圖書館에는 현책을 빼놓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政府가 舊 日本時代의 것과 其他 參考書等을 많이 利用하였다는 事實입니다. 이것은 여

기서 말씀드려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革命이 일어난 후 即時當局에서 그 政策을樹立하는데 利用한것이 國立圖書館藏書이었다고 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革命에 關한 歷史的인 事實의 參考或은 計劃에 關한 藏書라던지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政策을樹立할 때에 大端한 損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願하는것을 全部 提供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法典整理에 對해서도 가장 必要한 것이 舊文獻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奉仕의 綜合計劃을 세운다면 政府에 必要한 文獻ण—터가 될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文獻이 必要하다고 할때 그 文獻에 對해서 解說을 하고 或은 책을 찾아준다거나 여기에 對한 助言을 할수 있는 職員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現國立圖書館에 司書專門職職制에 依한 行政事務말고 司書는 3名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난 人力監查에 呼訴한 結果 明年에는 專門職을 16名으로 올리겠다는 것을 建議하였습니다.

그外에 近來에 革命政府가 文教政策으로서 間接侵略紛辟를 내세우고 있고, 革命政府의 커다란 課題의 하나로서 經濟5個年計劃을 推進하고 있는데 저는 이때야 말로 圖書館의 利用이 必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過去의 圖書館하면 곧 學科나 教養의 讀書機關이라는 그런 精神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圖書館은 自己의 어떤 知識을 充足시키기 爲해서 또는 趣味를 滿足시키기 爲해서만 가는곳이 아니라 그보다도 自己와 國家가 살기為한 生產力의 賽水池인 것입니다. 지금 經濟5個年計劃이라고 해서 돈이 生기지 않는 計劃은

안된다고 하지만 農事를 치울때에 땅을
파기만해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
기에 關聯된 知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
각합니다. 貧困을 打破하고 人間을 改造
하는데에는 그뒤에 圖書의 活動이 있어
야 되는데 이러한 圖書館이 公共圖書館이라면 그 公共圖書館에 對한 運營에 對한
研究或은 支援이 必要할 것입니다.

近來에 公務員 再訓練을 하는데 公務員
을 訓練할때 司書職의 訓練도 必要하다고
봅니다. 現在 國立圖書館은 圖書館要員을
養成할 수 있다는것이 職制에 있음에도
不拘하고豫算上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校圖書館問題에 있어서도 文
敎部에는 圖書選定委員會가 있어 現在
나오는 책中에서 가장 좋은것을 文敎部長官
이 優良圖書로 推薦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萬若 學校圖書館의 圖書選定事務 이러한
것이 꼭 그대로 文敎部에서 할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도 檢討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國立中央圖書館도
閱覽席을 느린다고 해서 座席數를 能事로
할것이 아니라 그만큼 圖書館學과 圖書館
運營에 對한 研究를 賦與시켜 달라 이런것
을付託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豫算입니다. 以後에 어떤일 하고싶은것은 國
立圖書館의 藏書 36萬卷을 모든 國民에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로 目錄作成을着手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一般的의 問題로서 國家書誌目
錄으로서解放後에 國內에서 出版된 圖書
目錄을 만들어야겠는데 이것은 現在 80%
以上進行되었고 그후에는 新刊目錄을 刊
行하여 大學圖書館 以上에는 보내고 있어
서 이것도 國家書誌目錄을 만드는데豫備

段階로서 모든 카ード가 準備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 慾心으로는各大學
圖書館의 貴重한 圖書目錄을 따로따로
명수가 없다면 그러한 資料를 綜合目錄으로
해서 어느 책은 어느 圖書館에 있다. 그러한
目錄을 만들어서 제各己 利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圖書館에서 大端히 부끄러운 것은
은 外國新聞, 雜誌는 一般에게 共覽시키지
않고 保存만하고 있읍니다. 이것도豫
算關係에서 할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各大學圖書館에서 各己 專門分野
의 雜誌 新聞을 必要한대로 사서보고 있
다면 어느大學에서 어떤 新聞 雜誌를 가
지고 있다는 情報를 官報로서 여러분에게
窺知시키는 반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圖書館法이通過되기 그前에라도
해아되겠다고 보는데 제立場에서 본것은
적어도 이것이 3,4個月前에 만 法이 制定
되었다면 國立圖書館의豫算에도相當한
反映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때
문에 圖書館法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엇보다
時急히 通過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立場과 같이
文敎部에서 서두르고 있는 한가지 理由는
다른것이 아니라 司書職의 資格에 關한
問題입니다. 어떻게 專門職의 資格을 賦
與할 수 있는가過去에 그러한豫測을 못
했기때문에 革命政府樹立後에 嘱託職員을
없애는 原則때문에 서울市內만 해도 司書
教師들이 많이 免職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이런것을 볼때 우리는 法이 끼치는
힘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고 일을 圓滑
하게 進行하기 為해서는 무엇보다도 圖書
館法이 뒷받침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強

調하는 바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國立圖書館의 立場에서 中央圖書館의 直制가 꼭 必要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必要조차 없읍니다.

끝으로 아까 嚴館長이 國會圖書館 所屬問題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事實로서 圖書館法 制定이 遲延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듣는 일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參考로 알고 있는 中에서 國會圖書館이 中央圖書館이 되었다는 것은 40餘個國가 운데서 오직 美國과 日本과 濟洲이 세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美國의 國會圖書館이 中央圖書館이 된 까닭은 美國은 文敎部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美國은 모두가 自治制로서 州政府가 中心이기 때문에 國會圖書館이 中央圖書館이 된 것은 當然한 일이고 日本에서 國會圖書館이 中央圖書館이 된 것은 백아더 司令部에 일이라 美國方式으로 했다고 생각되며 그外 特別한 事情은 모르겠고, 그 세나라 외의 다른 나라는 英國은 王立圖書館이 되어 있고 다른 나라는 거의 모두 行政府機關에 所屬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內務部傘下에 둔 나라도 있어서 그 나라의 事情에 따랐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外 거의 全部가 文敎部에 所屬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는 처음에 國會圖書館이 中央圖書館 口實을 하다가 國立圖書館이 生기자 吸收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現在 우리 나라 政府組織下에 있어서는 文化와 教育은 文敎部長官이 管轄하게 되어 있으므로 所屬管轄問題와豫算等 그러한 것은 嚴館長이 念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박수)

二. 大學圖書館

◎白麟(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課長)=먼저 國立中央圖書館의 性格부터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圖書館의 區分標準을 그 設置 主體에 두느냐 또는 奉仕對象이나 圖書館 技能을 標準으로 하느냐는 데 따라서 國立圖書館의 性格도 달라질 것입니다.

圖書館을 그 設置主體에 따라서 區分한다면 國家豫算에 依하여 維持되는 圖書館은 모두 國立圖書館이라고 하겠습니다. 日政時代의 우리 나라 圖書館統計에 보면當時 總督府 圖書館과 鐵道局 圖書館이 國立圖書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兩 圖書館은 國費로 運營되었기 때문에 統計上 國立圖書館에 넣었던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國費로 維持 運營되는 圖書館이 몇 곳 있습니다. 그中 代表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現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圖書館 그것입니다. 이兩 圖書館도 國費에 依하여 維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國立에 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圖協에서는 現在의 國立圖書館을 公共圖書館과 같이 分類하고 最高會議圖書館은 特殊圖書에 包含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區別方法은 그 技能面을 考慮하여 區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던 우리는 國家の 文獻 및 書誌를 統轄하여 圖書館을 代表하는 技能面에서 國立圖書館의 役割을 하는 國立圖書館이 있어야 할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名稱은 國立圖書館 이든 또는 國立中央圖書館이라고 하던 큰 問題가 아니고 國立圖書館으로서의 技能을 하는 圖書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性格의

國立圖書館은 하나以上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國立中央圖書館이 어떤것이냐? 하는것을 技能面에서 말하자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첫째는 國家의 文獻書誌를 統轄하는機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機關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것은 1776年 即 正祖初年에 設置된 奎章閣을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國立中央圖書館法이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음은 晚時之歎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國家 刊行物은 빠짐없이 蒐集保存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外國政府機關의 刊行物의 蒜集입니다. 이것은 國際交換을 通하여 外國文獻 資料를 蒜集하여 政府와 其他 必要한 讀者에게 情報를 提供하는 役割입니다. 넷째는 國家書誌를 統括하는 意味에서 版權問題로서 그나라에서 出版되는 것은 國立中央圖書館에서 管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國家書誌를 統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하나는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機關 全體에 對해서 奉仕하는 機關입니다. 即 말하자면 文獻을 通한 奉仕機關입니다. 다음은 非單 政府機關에만 局限할것이 아니라 他 圖書館의 發展을 為하여 善導하는 國立中央圖書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느 圖書館이 國立中央圖書館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던 國立中央圖書館은 그나라 그時代의 文化尺度가 될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閱覽者를 為한 單純한 場所의 提供이 아니고 名實共存 國立中央圖書館의 使命을 다 할수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以上 몇가지 技能面을

들어 國立中央圖書館에 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내 박수)

三. 最高會議圖書館

◎李詰珪(最高會議 圖書課長)=多幸히 圖書館法이 앞으로 곧 制定될것이 期待되어 여기에 對해서는 圖書館界는 勿論 一般國民들도 다같이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같은 公開討論을 할수 있는 機會를 가진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文敎部法案에 「國立中央圖書館은 文敎部長官의 所管에 둔다」는 條文이 있습니다. 實은 國立中央圖書館은 充分히 獨立할 수 있는 그러한 要件과 技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獨立해야 되겠다는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圖協雜誌를 通해서 이 問題에 對하여서는 생각한바를 發表한바 있습니다. 먼저 嚴先生이 말씀하신 中에서 過去 國立圖書館이 圖書館法을 遲延시켰다는 것은 取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內容은 亦是 國立中央圖書館의 必要性과 獨立의 要件, 獨立의 位置 이런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인데 먼저 말씀한 분들이 거의다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勿論 必要性이나 要件等은 누구나 다 같이 共通的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順序에 따라서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必要性에 있어서는 첫째 國家書誌에 타로서 國內出版物 即 一般圖書와 政府刊行物을 總網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것이고 둘째는 國内外 交換案務의 迅速과 統一性을 寄與하여야겠습니다. 이것은 政府刊行物과 一般刊行物의 交換을 通하여 그 나라 文化 모든것을 外國에 紹介하는것이

고 나아가서 國家間의 理解增進과 紐帶強化에 大端히 必要한 業務로서 將次 國立 中央圖書館은 이 重要한 技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셋째로는 國內 各圖書館 運營과 管理 그의 技術的 인 事項等에 對하여 將次 國立 中央圖書館은 協助와 助力を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 은 어디까지나 國立 中央圖書館이 行政的 인 強力한 權力を 갖는 것이 아니고 技術的 인 運營, 管理 그의 業務의 統一과 能率을 期할수 있는 役割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例를 들면 分類表의 統一化, 目錄表의 統一體系化, 印刷카드의 普及 이런것이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他圖書館에게는 많은 時間의 人的 節約과 能率을 期할 수 있는 좋은 條件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國立 中央圖書館의 技能을 말씀드리면 將次 國立 中央圖書館은 먼저 嚴先生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立法部에 對한 奉仕를 第一 첫째의 技能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國家行政을 擔當하고 있는 行政部나 法務를 擔當하는 司法部 그리고 一般國民에게도 奉仕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出版物 交換業務인데 이것은 國際的인 PR活動입니다. 이 PR은 重要한 것으로서 直接 間接으로 關係있는 機關과의 相互理害와 利益을 圖謀하는 活動인 것입니다. 이러한 PR을 國立 中央圖書館이 活潑히 展開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獨立의 要件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獨立해야 되겠느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國立 中央圖書館의 技能을 發揮하기 為해서 獨立해야 되겠습니다. 理由는 첫째로豫算面의 獨立을 생

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事業이나 政策을樹立하였다고 하더라도豫算의 뒷 받침이 없이는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것이고 또 自己機關에서豫算을 使用할 수 있는 裁量權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計劃한 業務遂行이 容易하지 않은 點을 들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人事面의 獨立을 들수 있는것인데 圖書館의 業務는 一般行政事務와는 달라 奉仕面의 多樣性에 비추어 이 方面의 能力과 敎養이 있어야 發展할수 있고 얼마든지 展開할 수 있기때문에 專門的인 敎育을 받은 사람의 圖書館奉仕를 擔當하여야 되겠습니다. 圖書館發展이 안된 原因은 制度面도 重要原因이지만 實相은 圖書館職員들이 地域社會와 너무나 距離를 벌리 하고 資料保全意識의 過剩, 實務能力과 敎養의不足 그리고 奉仕方法의 貧乏性等으로 하여금 圖書館發展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認識을 주지 못한 原因이 되는것입니다. 또 하나는 現在 우리나라의 實情을 말씀드리면 어느 圖書館이나 缺員이 있으면 圖書館教育을 받은 사람을 要求하지만 任命權者는 情實或은 權力等으로 이 方面의 敎育을 받은 사람을 採用하지 않는 境遇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에 있어서 直系制가 確立되지 않는 點도 들수 있습니다. 政府에서는 앞으로는 直系諸原則에 따라 職員採用을 하리라고 期待하고 있습니다. 또한 例로는 圖書館界上下職을 莫論하고 專門的教育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것은 專門教育을 받은 有能한 司書들이 좋은 提案과 計劃을 遂行하고자 하여도 圖書館에 關한 知識缺는 上級職으로 하여금 理解가 되지 않고 取進에 積極性을 띠우지

않아 能力있고 誠意를 갖고 業務를 遂行하려는 專門職 職員의 士氣가 振作되기는 커녕 오히려 士氣가 低下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上下職을 莫論하고 專門的 司書確保가 가장 根本的인 要件이라고 보겠습니다. 以上과 같이 人事面이나 豫算面의 獨立이 되면 圖書館의 모든 政策이나 業務는 活潑히 進行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國立中央圖書館의 機構와 獨立位置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機構로서는 中央圖書館은 目的이나 技能에 따라서 運營되어야 되고 組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立中央圖書館은 技能이나 目的等 機構를 分析을 해서 가장 合理的인 機構를 가지고 發足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機構라는 것은 既存圖書館을 앞으로 改革 或은 改編하는 것을前提로 하는 것입니다. 國立中央圖書館法이 制定되면 納本法에 依하여 國內 모든 出版物이 納本됨으로 이 納本에 따라 收書整理業務는 擴張되고 따라서 人員도 增加될 것이豫想되어 이러한 部局은 不得已 擴張되어야 할 것입니다. 一時에 큰 機構가 擴張되는 것이 아니고 業務의 緊急性이나 必要性에 따라 増設 또는 擴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豫算面에 抵觸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反面에 다른 部局은 年次의으로 業務에 따라 擴張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館長은 어떤분이 되어야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日本이나 美國같은데에서는 長官級으로 되어있음) 우리나라도 一級以上으로 待遇를 받는 人士로서 社會의으로나 教育面으로 德望이 높고 政黨과 關係가 없는 人士가 切實히 要求되는 것입니다. 嚴先生의 말씀은 過去 圖書館法

遲延은 國會圖書館이 하였다는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理가 없읍니다. 그當時에는 人員이 十餘名 藏書가 3萬餘卷밖에 안됐을것입니다. 이때 무슨 實力으로서 우리가 國立圖書館하고 對立해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過去 圖書館法이 通過되지 않은 理由를 말씀드리면 實은 國會會期의 不連續으로 말미암아 廢棄되곤 하였던 것인지 國會圖書館이 遲延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立中央圖書館의 技能으로 보아 國政의 中心機關인 立法에 屬하여 議員이나 關係職員에게 資料提供과 奉仕를 하여 모든 立法이나 政策決定의 後받침을 立法部에 屬하여 되겠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美國이나 日本도 같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獨立의 位置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立法部은 立法을 하고 豫算審議權과 全部를 監督하는 그런 權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의 必要性, 技能等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은 亦是 行政府에 屬하기보다는 立法部에 屬하는 것이豫算面으로 보거나 圖書館政策樹立 및 實行面의 容易한 點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主張해왔던 것이 이れ했고 또 外國 여러나라에서도 立法部에 對한 奉仕를 첫째 技能으로 삼고 있습니다. 亦是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보아서도 立法部에 屬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現在 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에 對해서若干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最高會議 圖書館에 屬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國家의 인見地에서 正當하게 要求할 수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의 獨立要件과 獨立의 位置를

強力히 主張한것입니다.

(自己立場辯明은 여기서 맙시다 하
는이 있음)

그러면 같은 技能의 國立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이 必要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豫算, 人的業務面으로서 二重三重으로 할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있는 두개의 圖書館을 改編 또는 統合할必要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個人보다 大乘의인 見地에서 正當한理由를 가지고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以上簡単に 마치겠습니다.

(장내 박수)

四. 特殊圖書館

◎千文岩(韓國研究院 圖書館)=여려 專門家들께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國立中央圖書館이 設置됨으로서 圖書館界의 發展뿐 아니라 國家의in 立場에서도 必要하다고 說明한 것을 들었으므로 어떻게 하면 빨리 國立中央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圖書館法이 制定되기 힘든바에는 于先 國立中央圖書館法이 制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1956年 2月에 그當時 國會議員 趙淳氏外 15名이 國立國會圖書館法을 制案하였든 것이다 會期關係도 있었겠지만 國立圖書館이 있는데 國會圖書館만 가지고 法을 制定할 수 있나 하는 理由로 廢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圖書館(前國會圖書館)이 合쳐서 國立中央圖書館으로 法도 制定되었으면 하는바입니다.豫算面에도 現在 두개 圖書館豫算을 合치면 基礎의인 事業은 훌륭하게 遂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兩圖書館 代表들은

合同하여 國立中央圖書館 設置推進委員會 같은 組織을 갖추고 兩圖書館 統合에 있어서의 問題, 將次의 問題等을 討議하여 그結果를 政府各機關에 提出하면 國立中央圖書館法이 쉽게 制定되리라고 믿습니다. 司會 李鍾文=우리는 이제 國庫金으로 維持되는 두개의 같은 性格을 띠운 圖書館으로 因하여 莫大한 國庫의 損失은勿論 業務面에서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記憶해야 할 것은 數는 둘이되 그中 어느 하나도 해야 할 本然의 事業을 忘却하고 좀 甚하게 말하면 오로지 「國立中央圖書館」이라는 看板을 獨占하려는데만 關心이 있는 듯한 印象을 줄가봐 걱정이 됩니다. 國家의 中央圖書館이 本然의 事業을 遂行하며 그以外에 必要에 따라 數個乃至 數十個의 國立으로 된 公共圖書館이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現在의 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圖書館의豫算을 合치면 約 2千3, 4百萬원이 되고 또 前者가 60餘名後者가 50餘名의 職員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合친다면 이돈과 人員으로 훌륭한 中央圖書館으로 發足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點 國家豫算의 浪費는勿論 國家事業으로서의 損失이 莫大한비가 있습니다. 우리 關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革命政府가 하루바빠 이問題를 是正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圖書館人 또는 一個 國民의 立場에서 볼때 앞으로 세워질 國立中央圖書館이 文敎部에 隸屬되건 國會에 附設되건 그것은 關心事가 아닙니다. 다만 하루바빠 中央圖書館다운 圖書館이 생겨 現在의 浪費와 損失이 是正되어 우리의 稅金이 効率的으로 使用되어 國家의 事業이合理化 되어야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점 을바른 認識과 理解가 아쉽습니다.